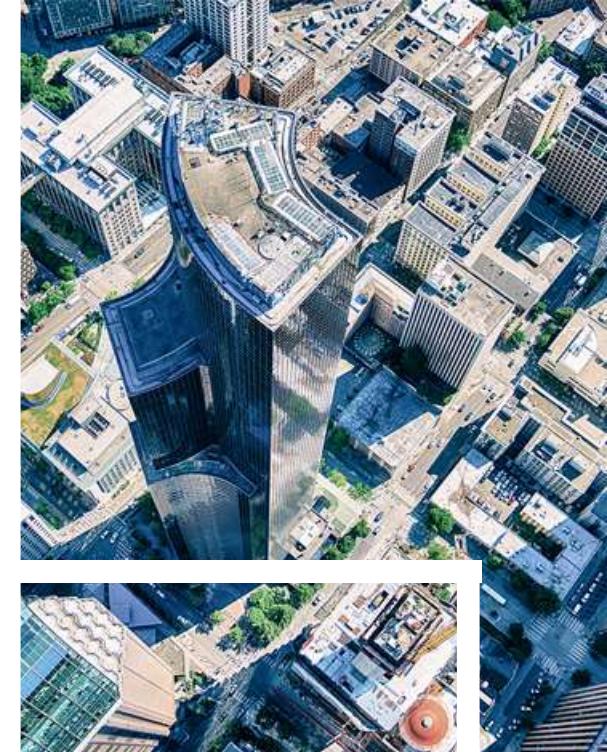


Samil Global Tax Update

January 2020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중국	비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인도네시아	세무상 공제 가능 비용
프랑스	ATAD II 도입 및 법인세율 규정
이탈리아	Digital Service Tax 도입 및 이자비용 손금 인정 한도
버뮤다/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경제적 실질 요건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중국

• 비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 국가세무총국은 공고 [2019] No.35 를 통해 비거주자의 조세조약 상 우대조항 적용과 관련한 제반 행정 절차를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세조약 우대조항을 적용한 비거주자는 관련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세무당국의 후속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만 존재함

(1) 원천징수자의 의무

- 원천징수자는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납세자가 작성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모두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만 존재하며, 비거주자 납세자가 실제로 조세조약 상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
- 단, 만약 원천징수자가 비거주자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신고서류 내용이 완전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세당국은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개정공고에 따르면 보관서류만으로는 비거주자 납세자의 적격요건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비거주자 납세자가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비거주자 납세자와 더불어 원천징수자는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 적정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의 조사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게 됨

(2) 비거주자 납세자의 의무

- 개정공고에 따르면 조세조약 우대조항을 적용하는 비거주자는 관련 법에 따른 법정 기한 동안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며, 관련서류 및 신고서류 상 내용의 진위여부, 정확성,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됨
- 만약 조세조약 우대조항을 적용한 비거주자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과세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과소납부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함

(3) 보관 필요 서류

- 개정공고에 따른 보관 필요서류에는 비거주자 납세자의 거주자증명서, 소득 관련 계약서, 이사회 결의안, 주주총회 결의안, 지급증명서, 기타 소유권 증명 관련 서류, 수익적 소유자 증명 서류 등이 있으며 이는 과거 규정에 비해 간소화된 것임
- 또한, 비거주자 납세자들은 적용하고자 하는 조세조약의 조항 또는 개인/법인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일한 신고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축소되었음

• PwC's Observation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신고서식 및 필요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비거주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었으며, 원천징수자의 의무가 축소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납세자의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사후조사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의 자가 점검 책임과 사후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 따라서, 조세조약 상 우대조항 적용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후조사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 세제 혜택 업데이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11월 12일 Regulation No.78 (GR-78)를 발행하였음. GR-78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공제제도에 대한 개정임. GR-78은 2019년 12월 13일에 발효되었으며, 이전에 발표된 일련의 정부규제(2015년의 GR-18 및 2016년의 GR-9)를 폐기함

(1) 특정 사업부문 또는 지역

- GR-78은 183 가지의 적격 투자를 다룸(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KBLI) 기준). 동 사항은 166 가지의 지정 사업부문 및 17개의 지정 사업부문&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기존에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였던 일부 영역은 해당 요건이 제외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PwC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2) 조세 제도(Tax facility) 패키지

- 주요 조세 제도는 GR-18과 동일하지만, 각 제도의 세부사항이 변경됨
 - ① 투자된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고정 자산(토지 포함)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30%를 과세 소득에서 경감(5% 상당액을 6년 동안 상업용 생산에서 공제)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GR-78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신규 자산 취득(타국가로부터 완전히 이전한 경우 제외)
 - ✓ 납세자가(임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소유하고 주요 사업 활동에 이용

- ② GR-78은 연간 자격을 갱신하여 다음과 같이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각각 연장(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 GR-78 하의 적격투자: 1년연장
 - ✓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 1년 연장
 - ✓ 인도네시아산 원자재/구성요소를 70%이상 사용: 2년 째부터 현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연장
 - ✓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고용: 4년이상 연속으로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년 연장, 또는 4년이상 연속으로 6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2년 연장

(3)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한 절차 변경

- GR-78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업적 생산 이전에 세금 공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납세자의 사업자 고유번호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 ✓ 새로운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OSS 시스템에 의해 발행된 후 1년 이내에 신청
- 세부 신청 절차는 재무장관령으로 추후 제정 예정임

(4) 제한사항

- GR-78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이용한 납세자는 다음의 조세환급제도 이용 불가
 - ① 통합경제 개발구역(IEDZ)의 조세환급제도
 - ② GR-94/2010에 규정 되고 GR-45/2019를 통해 개정된 조세 혜택

- ③ GR-94/2010에 규정되고 GR-45/2019를 통해 개정된 노동 집약형 산업의 조세감면혜택

(5) 경과규정

- 기존 GR에 따라 적용 받은 조세감면의 경우 해당 감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 가능
- 2019년 12월 13일 GR-78의 발효일 이전에 BKPM의 장에게 제출된 GR-18 jo GR-9에 따른 조세환급제도의 신청은 GR-18 jo GR-9에 따라 적용
- GR-18 jo GR-9의 유효기간(2015년 5월 6일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에 발행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진 납세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R-78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① 투자승인이 GR-18 jo GR-9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 적이 없음
 - ② 사업 명세서는 GR-78에 규정된 각 지정사업부문 및/또는 지역의 요구사항을 충족
 - ③ 회사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음
 - ④ 신청서를 2020년 12월 12일까지 제출
- 기존 GR에 의거한 규제의 실시는 GR-78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유효함
- **옴니버스 세법 초안**
- 정부는 최근 두 옴니버스 법의 도입을 모색한다고 발표. 각 법은 다음의 내용을 목표로 함:
 - ① 투자, 자발적 세법 준수,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평등을 촉진

- ②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적극적인 투자목록 업데이트
- 옴니버스 법은, 기본 법률을 완전히 개정할 필요없이 특정 입법 문제에 대처
- 최신 공개된 초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법인세율 인하
 - ② 인도네시아 국내 납세자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 ③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외국납세자의 원천징수세액 감면
 - ④ 개별납세자의 과세소득 계산에 대한 속지주의 규정(183일 거주 기준)
 - ⑤ VAT 과세기업에 VAT 매입세액 공제 완화
 - ⑥ 자발적 세법 준수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제재의 표준비율 제시
 - ⑦ 납세자 수령 이자보상관련 표준비율 제시
 - ⑧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에 대한 과세 변화(VAT 신고 증대 및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 ⑨ 지방세와의 조화
 - ⑩ 원스톱(One-stop) 면세 요건 제시

- **PwC's Observation**

- GR-78을 통해 다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무 환경을 이전에 비해 기업 친화적으로 개정하였으며, OSS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변경된 세무사항 및 신고 시스템 변경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고함

프랑스

• 2020 Finance Act 국회 통과

- EU Directive 2017/952 (Anti-Tax Avoidance Directive II, “ATAD II”)를 프랑스 법인세제에 도입하도록 하는 2020 Finance Act 가 프랑스 국회를 통과함. 2019년 12월 19일 Finance Act 의 국회 통과에 따라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Enterprise” 혹은 “MNE”) 중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2020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을 예정임. 이번 통과된 Finance Act 는 ATAD II 의 프랑스 법인세제 적용 외 기존 예정되어 있던 법인세율 인하 규정의 대기업 적용 연기 등을 골자로 함

(1) ATAD II 의 프랑스 법인세제 적용

- Finance Act 에 들어올 예정인 ATAD I 과 ATAD II 는 국가간 세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를 해소하고자 하는 2015 OECD BEPS Action 2 의 일부로서 도입된 규정임
- Finance Act 는 EU 국가뿐만 아니라 EU 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이중공제, 이전된 불일치(Imported Mismatch) 및 지급받은 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지급한 자가 비용 공제를 받는 Deduction Without Inclusion 관련 규정에 집중하여 ATAD II 를 프랑스 법인세제에 도입할 예정임
- 통과된 Finance Act 의 적용 대상은 프랑스 법률상 정의되는 법인간 특수관계 (“Associated Entities”) 여부 (직접 지분율 25%, 간접 지분율 50% 및 실질적 특수관계 포함)와 혼성불일치의 종류에 따라 판단됨

- 새롭게 통과된 혼성불일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거래 중 거래 혹은 지급되는 소득의 세무상 분류 차이로 인하여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에서 비용이 공제 가능하나,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에서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혼성회사 (“Hybrid Entity”) 거주지의 세법과 혼성회사에 투자하는 자의 거주지 세법간 차이를 이용하여 혼성회사의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공제받는 비용;
 -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법인 중, 본점 및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세법 차이로 인하여 과세소득의 실현 없이 비용공제만 이뤄지도록 하는 소득 지급;
 -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나, 현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아 동 고정사업장에서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비용;
 - 혼성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중 지급받는 자가 본인의 거주지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실현하지 않도록 하는 비용;
 - 본점 혹은 고정사업장간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국가간 세법 차이로 인하여 일방에서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의 비용 공제;
 - 하나의 거래에 대해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와 다른 국가에서 모두 비용 공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
- Finance Act 는 금액이 세액 감면, 저세율 적용, 세액공제 혹은 환급 (원천징수 제외)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비용 공제가 발생한 24개월 이내에 과세소득으로 실현될 경우,

- 일방의 비용이 타방 지급받는자의 거주지에서 과세소득으로서 실현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은 프랑스에서 금액을 지급하는자의 단계에서 이뤄지도록 하였고, 보조적 성격의 규정으로 국외에서 비용이 공제될 경우, 프랑스에서 익금산입을 하도록 규정함
- 공제 가능한 비용이 특수관계 법인간 거래 혹은 인위적인 구조를 통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다른 혼성지급 (“Hybrid Payment”)을 상계하는 경우 그러한 Hybrid Payment의 효과를 관련 국가에서 부인하지 않는 한 공제가능비용의 세무효과는 부인됨. 금융거래 중 혼성양수도 (“Hybrid Transfer”)를 통해 원천세의 의무가 감면될 경우, 감면되는 비율은 거래 금액의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적용됨
 - 프랑스와 다른 국가의 이중거주자가 하나의 비용에 대해 각각 이중공제를 적용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프랑스에서의 공제는 불가능함. 단, 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거나, 혹은 다른 국가가 EU 가입국 중 조세조약을 통해 동 인원에 대한 거주지를 프랑스로 보아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Finance Act 는 프랑스에 설립된 역혼성회사 (“Reverse Hybrid Entity”)에 관한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집합투자회사에 대한 동 규정 적용은 배제하기로 함

(2) 대기업 대상 법인세율 인하 연기

- Finance Act 는 2018년 개정된 법인세율 인하를 대기업에 국한하여 연기하기로 함.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매출 EUR 250M 이상인 법인들은 인하된 28%의 법인세율이 아닌 31%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게 됨(EUR 500K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31%를 적용하며, 그 미만은 28%를 적용함).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동 대기업들은 27.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법인들이 25%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을 받을 예정임.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일부 원천세 개정

- Finance Act 는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여 일부 30%였던 원천세율을 조정함
- 세부 조정 사항은 프랑스 세법에 따른 원천세의 종류마다 일부 상이하게 적용될 예정이나, 2022년 1월 1일부터 이번 Finance Act 에 포함된 모든 원천세율은 법인세율과 일치하는 25%로 적용될 것임

(4) 기타 EU 규정의 도입

- EU 국가간 사업장 설립의 자유 규정(EU Freedom of Establishment)에 따라 프랑스 국내 외국 법인들의 지점의 간주 분배에 적용하던 원천세 규정을 개정함. 동 개정으로 인하여 EU 혹은 EU 경제연합 가입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지점에서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원천세 대상이 된 자본이 프랑스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
- EU 국가간 자본 이동의 자유 규정 (“EU Free Movement of Capital”)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결손 외국법인의 원천세를 일시적으로 환급 혹은 이연하도록 원천징수 규정을 개정함:
 -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EU 혹은 프랑스와 상호협의규정을 체결한

- 유럽경제협력지역에 위치한 외국인인 경우;
- 지급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수익자의 현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 환급 혹은 이연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 발생 3개월 이내에 프랑스 과세관청에 외국법인에 의해 직접 신청 되어야 함
- 원천징수의 이연은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이 발생하거나, 구조개편 등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세무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혹은 관련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취소 될 수 있음

(5) 기타 개정 사항

- 기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연결재무재표 작성 및 신고 대상 법인의 (EBITDA 30% 혹은 3 백만 유로 초과로 인한 불공제 금액 중) 순금융비용의 75%까지 허용된 이자비용 추가 공제 대상의 범위를 연결재무제표 신고 대상이 아닌 국외에 사업장과 특수관계자가 없는 프랑스 법인까지 확대함
- 최근 개정된 프랑스 회사법상 동일 지배 하자회사간 합병과 분할 시 요구되던 주식교환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세무이연, 연결납세, 이월결손금 승계 등 규정 또한 개정됨
- 합병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Tax Ruling 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함:
 - 승계 대상 이월결손금 금액이 2 십만 유로 미만;
 - 이월결손금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에서 발생하지 아니함;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혹은 사업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함

- 프랑스 부가세 등 조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의 신상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인터넷에 공시하는 Name and Shame 규정이 도입됨

- **PwC's Observation**

- 혼성불일치 조정은 OECD의 기준에 맞추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이며,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EU Directive 2017/952 에 따라 국가별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혼성 회사 등을 통한 복잡한 해외 투자구조를 고려하는 경우 관련 법률 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이탈리아

- **2020년 예산안 공표**

- 이탈리아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에 시행될 예산안을 공표함
- 동 예산안에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와 명목이자비용(Notional Interest Deduction) 등 법인세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됨

(1) 명목이자비용공제(NID) 재도입

- 일정 자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3%로 명목 이자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2019 회계연도부터 재적용됨
- 작년 2019년 개정 예산안에서 NID 가 폐지되었지만, 2020 예산안에서 재도입 되고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므로 명목이자비용 공제에 실질적인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명목이자비용 계산시 2010년 12월 31일부터의 자본의 증감에 대해 계산하면 됨

(2)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

- 2020년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3%의 단일세율로 DST가 부과됨

[과세 대상 서비스]

- DST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참여가 요구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함
 - ①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채널링
 - ②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상품/서비스 거래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제공
 - ③ 디지털 인터페이스 상 수집된 사용자 정보 및 사용자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정보의 전송
- 반면, 아래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① 직접적인 B2C 거래의 온라인 중개 활동
 - ② 웹 포털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B2C 온라인 거래
 - ③ 디지털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지급결제만을 위한 서비스 또는 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
 - ④ 전기/가스/환경 관련 증서/연료 등의 교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관리 및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전송
 - ⑤ 결제시스템, 거래 플랫폼 등 감동 당국의 승인 및 감시를 받는 금융거래 관련 디지털 인터페이스
 - ⑥ 위 4, 5 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데이터 판매

[납세의무자]

- DST는 당기에 위에서 언급한 과세대상 서비스 수익을 인식한 사업체 중 직전 연도에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체에 대해 과세됨
 - ① 전세계 총 수입금액 750 백만 유로 이상
 - ② 상기 언급된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탈리아에서 얻은 수익이 최소 5.5 백만 유로 이상
- 서비스 이용자가 과세기간 중 이탈리아 내 소재 시, 해당 서비스 수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 서비스 이용자의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기가 이탈리아 내 위치하는지 여부는 기기의 IP 주소를 기준으로 함

[과세 기간]

- 과세 기간은 사업연도에 따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수익을 얻은 다음 사업연도 2월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3월 31일까지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3) Industry 4.0 계획 관련 신규 세액공제 도입

- 동 예산안에는 투자활동에 대한 기존 혜택인 ‘Super-amortization’ 및 ‘Hyper-depreciation’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포함됨
-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며 새로운 자본재에 투자한 기업에 해당함
 - 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혹은 투자 후 대금의 20%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2021년 6월 30일) 동안의 투자 활동

- ② 이탈리아 내 생산 활동을 위한 신규 자본재에 대한 투자일 것
 - ③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은 신규 공제에서도 적용 제외됨
- 이탈리아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도 규모, 사업분야 등을 불문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상기 언급된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 공제는 소요 비용의 6%이며, 공제 한도는 2 백만 유로임
- 한편, 기업의 디지털화 및 기술적 변화를 위한 투자 활동의 경우 투자액 2.5 백만 유로까지는 투자비용의 40%, 2.5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의 20%를 10 백만 유로를 한도로 공제 가능함
-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15%(한도 70 만 유로)를 공제함
-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경제 개발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 외에도, 2020 예산안은 생태 전환 분야의 R&D 활동 및 다른 혁신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세액공제를 예고함

(4) 플라스틱 및 설탕세

- **플라스틱세:** 포장 목적의 플라스틱 제품 소비에 대하여, 플라스틱 1kg 당 0.45 유로의 세금을 부과함(다만, 10 유로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 **설탕세:** 달콤한 비알콜 음료 소비에 대하여, 완제품의 1 헥타리터당 10 유로 및 희석 과정에 사용될 제품의 1kg 당 0.25 유로의 세금을 부과함

- **PwC's Observation**

- 이탈리아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DST 도입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임
- 한편, 이탈리아 DST는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적용되는 경우 이탈리아의 DST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수 있음

버뮤다,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 **경제적 실질 요건의 개정**

- 버뮤다 정부가 경제적 실질 요건 개정 제2 법(2019)을 2019년 12월 20일 통과시켜 2019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됨
- 바베이도스 정부는 OECD와 European Code of Conduct Group(이하 “CoCG”)의 검토와 수개월에 걸친 추가 협의에 따라 기업법(경제적 실질 요건) 2018-41을 폐지하고 최근에 제정된 기업법 2019-43과 경제적 실질 요건 지침 버전 1(이하 “바베이도스 지침”)으로 이를 대체함
- 아랍에미리트 재무부는 2020년 1월 5일 경제적 실질 요건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이하 “FAQs”)을 발표함

(1) 버뮤다

- CoCG는 버뮤다를 “실질적 경제 활동 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국외 구조가 가능한 조세 제도가 존재”하는 관할구역(즉, ‘회색’ 관할구역)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버뮤다 정부는 버뮤다 관련 법이 기타 ‘백색’ 관할구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주회사:** ‘순자산 지주 회사’의 정의를 반영하여 지주회사의 범위가 수정됨

- ② 운송업: 운송업이란 버뮤다 영토 이외의 세계 어디에서나 승객, 물건, 또는 우편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객 운송 유람선을 운영하는 기업은 범위에 포함되나 선박 소유만으로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③ 금융업 및 리스업: 개정 전 버뮤다 법은 금융업과 리스업을 구분하였으나 개정 후 ‘금융 및 리스업’으로 결합함
- ④ 보험업: 개정된 법은 보험업 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험 관리인, 브로커, 대리인 및 기타 중개인을 제외함
- ⑤ 내국 법인: ‘내국 법인’ 및 ‘내국 유한 책임 회사’는 버뮤다에서만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다국적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 정의됨

(2) 바베이도스

- 바베이도스 법 개정안은 2019년 OECD 와 CoCG 가 제기한 개정 전 법안의 기술적 결함과 누락을 시정하였으며 주요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연례 보고 절차의 도입
 - ② 관할 관청이 경제적 실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4년의 기간 제공
 - ③ 2년 연속 채무불이행 시 적용되는 파업 법인 가산세 조항의 도입
 - ④ ‘내국 법인’ 정의의 확대
 - ⑤ 지주 사업의 하위 범주에 대한 명확한 구분
 - ⑥ 바베이도스 거주자가 통제하고, 다국적 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바베이도스에서만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활동으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내국 법인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의 도입

- 바베이도스 지침은 바베이도스 법의 범위와 적용을 위한 뒷받침을 제공하며, 내국 법인과 관련된 일부 용어를 정의함
- 지침에 포함된 주요 규정 중 하나는 개시일로, 모든 내국 법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경제적 실질 요건을 따라야하고, 일부 제외 법인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따라야 함

(3)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 UAE 의 경제적 실질 요건(이하 “UAE 규정”)은 2019년 4월 내각 결의를 통해 발효되었고 이후 2019년 9월에 관련 지침(이하 “UAE 지침”)이 발행됨
 - ✓ UAE 법인을 위한 행정적 의무사항
 - ✓ 임직원이 UAE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특정 관련 사업
- UAE 재무부는 2019년 12월 UAE 규정과 UAE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FAQs 를 게시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 ① 8 번: UAE 법인과 규제 당국은 관련 사업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결정 시 ‘실질 우선주의’를 채택해야 함
 - ② 10 번, 38 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UAE 법인은 규제 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③ 11 번, 39 번: 사업연도 중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법인은 경제적 실질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 ④ 16 번: ‘핵심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UAE에 거주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 ⑤ 17 번: 임원은 UAE 거주자가 아니어도 되나, 이사회에 참석 시에는 실제로 UAE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함
- ⑥ 27 번: 지주회사 관련 UAE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지주 사업은 UAE 내에서 ‘지시 및 관리’될 필요가 없음
- ⑦ 33 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기타 채무 증권을 보유한 UAE 법인은 리스-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⑧ 24 번, 31 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UAE 법인이 사업 수행의 일부로서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부수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음
- ⑨ 41 번: UAE 법인이 UAE 규정을 준수하고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함
 - ✓ 관련 사업으로 얻은 수입의 유형과 금액을 식별
 - ✓ 관련 비용, 직원, 부지 및 기타 사용된 자산의 식별
 - ✓ 핵심 소득 창출 활동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보장

- **PwC's Observation**

- 다국적 기업은 경제적 실질 요건이 그들의 사업 또는 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양한 관할구역 내에서 요구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야 함
- 해당 국가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계당국 직권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 요건 및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고려해야 함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종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소주현, Partner

02 709 8248
so.juhyun@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 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